

#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069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성준, 박강산,  
박승진, 박영한, 봉양순,  
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  
정준호, 허·훈, 홍국표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운영사항을 심의·자문 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,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·자문 사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운영 사항을 추가함(안 제8조제3호).
- 나.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수정함(안 제12조제1항).
- 다.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(안 제14조).

##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9조제4항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 를 “한 차례만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3조)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5년 12월 31일” 로 하며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)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9조(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~ ⑩ (생략)</p> <p>제12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34</p> | 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9조(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한 차례만</u> -----.</p> <p>⑤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</p> |

|  |   |
|--|---|
| <p><u>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제13조(특별회계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</u></p> | <p><u>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3조(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) 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4조(특별회계 존속기한) -----</u><br/> <u>----- 2025년 12월 31일-</u><br/> <u>-----.</u></p> |
|--|---|